

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·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병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·용달화물
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
합니다.
-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「화물자동차
운수사업법」 개정에 따라,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이 기존의
‘용달/개별/일반’ 업종에서 ‘개인/일반’ 업종으로 개편된 내용
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.
- 이에 조례의 제명을 현행 “개별·용달화물자동차”에서 “개인
화물자동차”로 변경하고, 조문 내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
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